

부속서 I
호주의 유보목록

호주 유보목록을 위한 서설

호주는 다음 의무에 반하여 2005년 1월 1일에 존재하였으나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 유보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정부 수준의 모든 비합치 조치를 유지하고 이 유보목록에 추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제7.2조(내국민 대우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1.3조(내국민 대우 – 투자)
- 나. 제7.3조(최혜국 대우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1.4조(최혜국 대우 – 투자)
- 다. 제7.5조(현지주재 – 국경 간 서비스무역)
- 라. 제11.9조(이행요건 – 투자), 또는
- 마. 제11.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투자)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중앙 및 지역
조치근거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연방)(FATA), 1989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규정(연방), 1998년 금융부문(지분보유)법(연방) 및 장관성명을 포함한 호주의 외국인투자정책 1994년 토지법(퀸즐랜드) 1988년 외국인 토지소유 등록법(퀸즐랜드)
유보내용	<u>투자</u> <u>연방</u> (가) 다음의 투자는 호주정부의 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한 통보가 요구될 수 있다 ¹ . 가. 투자 액수를 불문하고, 외국인 ² 의 언론분야에 대한 5퍼센트 이상의 투자 나. 다음 분야에서 자산가치가 2억4천8백만 호주달러 [#] 를 초과하는 기존 ³ 호주 사업 또는 지정 회사 ⁴ 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¹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FATA). “투자”란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 제2절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장관성명에 명시된 활동을 말한다. 준자본 성격을 가지는 부채 상품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은 외국인직접투자로 취급될 것이다.

² “외국인”이란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 제5절에 정의된 바에 따라 다음을 말한다.

- 가. 상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 나. 상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외국회사가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 다. 각각 상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외국회사인 2인 이상의 인들이 합하여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 라. 상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외국회사가 실질적인 지분을 보유하는 신탁재단의 수탁자, 또는
- 마. 각각 상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외국회사인 2인 이상의 인들이 합하여 실질적인 지분을 보유하는 신탁재단의 수탁자

[#] 이는 2013년 1월 1일자 금액이다. 매년 1월 1일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호주국가회계의 GDP 잠재적 물가지수와 연동된다. 협정이 2014년 1월 1일까지 발효되지 아니하면, 이 금액은 발효시에 연동될 것이다.

³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기존”이란 투자가 제안되거나 행해지는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⁴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지정 회사”는 다음을 말한다.

- 가. 무역회사

- 1) 통신부문
- 2) 호주 내 또는 호주 착발로 제공되는 공항, 항구설비, 철도기반시설, 국제 및 국내 항공 및 선적 서비스를 포함하는 운송부문
- 3) 호주 또는 그 밖의 방위군에게 대한 훈련 또는 인적자원 공급, 또는 군수물품, 장비 또는 기술의 제조 또는 공급
- 4) 군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장비 또는 기술의 제조 또는 공급
- 5) 암호화 및 보안 기술과 통신시스템의 개발, 제조 또는 공급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 그리고
- 6)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추출(또는 추출권), 또는 핵설비의 운영

다. 금융부문회사⁵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자산가치총액이 10억7천8백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기존 호주 사업 또는 지정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나. 금융회사

- 다. 준주의 회사 관련 유효한 법에 따라 그 준주에서 설립된 회사
- 라. 최종 회계일에,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는 자산의 가치의 합이 2억4천8백만 호주달러(유보항목의 나호의 경우) 또는 10억7천8백만 호주달러(유보항목의 다호의 경우)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외국회사
 - 1) 호주 내에 위치한 토지(그러한 토지에 대한 법적 및 형평법 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 2) 채굴권
 - 3) 호주에서 설립된 회사의 지분
- 마. 최종 회계일에, 호주 회사 또는 호주 회사들의 지주회사인 외국회사로, 그 날짜에 그 호주 회사 또는 호주 회사들의 자산 가치의 합이 2억4천8백만 호주달러(유보항목의 나호의 경우) 또는 10억7천8백만 호주달러(유보항목의 다호의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
- 바. 최종 회계일에, 이 각주의 라호 또는 마호에 언급된 외국회사의 지주회사인 회사
- 사. 최종 회계일에, 이 각주 라호에 언급된 종류 또는 종류들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로, 그 날짜의 그러한 자산 가치의 합이 그 날짜의 외국 회사와 그 회사의 모든 자회사들의 자산 가치의 합의 절반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 또는
- 아. 최종 회계일에, 호주 회사 또는 호주 회사들의 지주회사인 외국회사로, 그 날짜에 그 호주 회사 또는 호주 회사들의 자산 가치의 합이 그 날짜 외국 회사와 그 회사의 모든 자회사들의 자산 가치의 합의 절반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

이는 2013년 1월 1일자 금액이다. 매년 1월 1일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호주국가회계의 GDP 잠재적 물가지수와 연동된다. 협정이 2014년 1월 1일까지 발효되지 아니하면, 이 금액은 발효시에 연동될 것이다.

⁵ “금융부문회사”란 1998년 금융부문(주식보유)법 제3절에 정의된 바에 따라 다음을 말한다.

- 가. 승인된 예금수령기관,
- 나. 승인된 보험회사, 또는
- 다. 이 각주의 가호 또는 나호에 명시된 회사의 지주회사

라. 외국인에 의한 10억7천8백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가치를 가지는 개발된 비거주 상업부동산의 인수

마. 규모를 불문하고 외국정부투자자의 직접 투자

신고된 투자는 임시명령을 조건으로 거절 및/또는 특정 조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승인될 수 있다. 신고가 요구되지 아니하거나 수령되지 아니한 가항부터 마항까지에 기재된 투자는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A조에 따라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기존 금융부문회사에 대한 허용될 수 없는 주식보유 상황이나 실질적 지배권⁶으로 이어질 외국투자자의 기존 금융부문회사 지분인수나 외국투자자의 약정체결은 거절되거나 특정 사항⁷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다) 이 유보항목에 명시된 조치에 더하여,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의 다른 유보항목은 다음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나 그와 관련된 요건을 부과하는 추가 비합치 조치를 규정한다.

가. 텔스트라

나. 국립혈청연구소

다. 콴타스 항공

라. 콴타스를 제외한 호주 국제항공사

마. 도심 토지

바. 연방임대공항

사. 농지

아. 농업, 그리고

자. 해운

퀸즐랜드

특정 임대(투표로 취득) 및 장관 재량의 그 밖의 임대는 임차인이 그 기간 중 최초 7년 동안 직접 임차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모든 토지 소유권 변동은 등록되어야 하지만, 외국인 토지 보유자의 경우에는 규정된 신고를 통하여 토지에 대한 현재

⁶ 1997년 4월 9일자 재무장관 보도자료 제28호를 포함한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장관성명

⁷ 1998년 금융부문(주식보유)법에 정의된 “허용될 수 없는 주식보유상황” 및 “실질적 지배권”

지분과 취득, 토지 지분 처분, 그리고 외국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외국인에 해당되게 되는 것에 대한 통지를 공개할 추가 의무가 있다.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며, 기소, 금전적 벌금의 부과 및/또는 토지에 대한 지분이 정부에 몰취될 수 있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2001년 회사법(연방) 2001년 회사규정(연방)

유보내용 투자

비상장회사의 이사 중 최소 1인은 상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이사 중 최소 2인은 상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하여야 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현지주재(제7.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협회법(노던준주) 1991년 협회설립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1981년 협회설립법(퀸즐랜드) 1985년 협회설립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64년 협회설립법(테즈메이니아) 2012년 협회설립개혁법(빅토리아)

유보내용

노던준주

협회⁸의 설립 신청은 반드시 노던준주의 거주자인인이 해야 한다.

설립된 협회의 임원은 노던준주의 거주자인인이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협회의 설립 신청은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의 거주자인인이 해야 한다.

설립된 협회의 임원은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의 거주자인인이어야 한다.

퀸즐랜드

서기직은 그 직위에 있는인이 퀸즐랜드 또는 퀸즐랜드 경계에서 65킬로미터 내에 있는 다른 주의 거주자가 아니게 되면 공석이 된다.

설립된 협회의 경영위원회는 서기가 퀸즐랜드 또는 퀸즐랜드 경계에서 65킬로미터 내에 있는 다른 주에 거주하는 개인이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설립된 협회의 경영위원회의 위원들은 협회가 협회에 대한 문서 송달을 위하여 지정된 주소를 가지도록 보장하여야 한

⁸ “협회”는 무역협회를 포함한다.

다. 지정된 주소는 문서가 직접 개인에게 송달될 수 있는 주내의 장소여야 한다. 우체국 사서함은 지정된 주소로 인정될 수 없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설립된 협회의 임원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하는인이어야 한다.

테즈메이니아

테즈메이니아 거주자가 아닌 인은 설립된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빅토리아

협회 설립을 신청하는 인은 호주 거주자여야 한다.

설립된 협회의 제1서기와 서기는 호주 거주자여야 하며, 설립을 신청하는 협회의 제1서기는 호주 거주자여야 한다.

합병된 협회의 제1서기는 호주 시민이어야 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2002년 협동조합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2012년 협동조합(연방법채택)법(뉴사우스웨일스) 협동조합법(노던준주) 1997년 협동조합법(퀸즐랜드) 1997년 협동조합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99년 협동조합법(테즈메이니아) 2013년 협동조합 연방법적용법(빅토리아) 2009년 협동조합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u>모든 호주 주 및 준주</u></p> <p>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고, 협동조합은 운영되는 각 주 또는 준주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등록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 위치한 사무소에 보관되어야 한다.</p> <p>협동조합의 서기는 호주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인이어야 한다.</p> <p>외국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각 주 또는 준주에서 협동조합의 대리인으로 행위할 인을 선임하여야 한다.</p> <p>외국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각 주 또는 준주에 거주하는 인을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모든 통지 및 법률문서의 송달을 받을 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p> <p>협동조합의 이사 중 최소 2인은 호주 거주자여야 한다.</p>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1963년 파트너쉽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1892년 파트너쉽법(뉴사우스웨일스) 1997년 파트너쉽법(노던준주) 1891년 파트너쉽법(퀸즐랜드) 1891년 파트너쉽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891년 파트너쉽법(테즈메이니아) 1958년 파트너쉽법(빅토리아)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뉴사우스웨일스, 노던준주, 퀸즐랜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테즈메이니아 및 빅토리아

주 또는 준주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쉽 또는 법인화된 유한 파트너쉽은 해당 주 또는 준주에 사무소, 본점 또는 등록된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분야	보안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1997년 보안산업법(뉴사우스웨일스)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사우스웨일스에서 보안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려는 인은 호주 시민 또는 호주 영주권자여야 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법(노던준주)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경품권)규정(노던준주)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제3자 거래제도 ⁹ 의 발기인은 호주에 사무소를 유지하여야 한다.

⁹ “제3자 거래제도”란 소비자가 공급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는 것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취득과 관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할인, 양보나 이익의 형태로 제3자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조건이 되는, 제도나 약정을 말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1981년 변호사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외국 법무법인의 자회사인 회사는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른 회사나 법인과 이익을 분배하도록 허용되지 아니한다. 외국법을 취급하는 외국인인 자연인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자문사로서만 현지 법무법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지 변호사와 파트너쉽을 체결하거나 현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호주 외부 지역의 법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1990년 특허법(연방) 1991년 특허규정(연방)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특허변호사는, 호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등록하기 위해서는, 호주에 상시적으로 거주해야 한다¹⁰.

¹⁰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호주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호주가 그 자신의 영구적인 거주지인 경우, 일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호주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별한 또는 일시적인 목적으로만 호주에 거주하는 인은 상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1947년 수탁회사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1964년 수탁회사법(뉴사우스웨일스) 1981년 회사(수탁자 및 개인대리인)법(노던준주) 1968년 수탁회사법(퀸즐랜드) 1988년 수탁회사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53년 수탁회사법(테즈메이니아) 1984년 수탁회사법(빅토리아) 1987년 수탁회사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노던준주

2001년 회사법(연방) 제601RAA절에 정의된 “허가된 수탁회사” 또는 노던준주의 법에 따라 검인증서를 취득하거나 그와 같이 행위하도록 승인된 법인이 아닌 한, 법인은 검인증서를 취득하거나 유언 집행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재산의 수탁자로 행위할 수 없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회사는 2001년 회사법(연방) 제601RAA절에 정의된 “허가된 수탁회사”인 경우에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탁회사로 행위할 수 있다.

그 밖의 모든 오스트레일리아 주 및 준주

2001년 회사법(연방) 제5D장의 의미 내의 “허가된 수탁회사”가 아닌 한, 법인은 검인증서를 취득하거나 유언 및 유언보충서의 집행인으로 행위할 수 없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중앙 및 지역
조치근거	<p>2001년 회사법(연방) 1998년 주택협동조합 및 스타-보우캣 소사이어티스법(뉴 사우스웨일스) 1981년 변호사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2009년 변호사규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80년 부동산중개인법(빅토리아)</p>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연방

호주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인은 회사의 감사나 청산인으로의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최소 1인의 파트너는 등록된 회사의 감사로서 호주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인이어야 한다.

뉴사우스웨일스

특정된 종류의 학회 및 협회의 감사가 되고자 하는 인은 뉴사우스웨일스에 상시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의 신탁계정을 위하여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당사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여야 한다.

빅토리아

감사법인은 감사법인의 최소 1인이 호주 거주자가 아닌 한 재단 대리인의 계정을 감사할 수 없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건축사법(노던준주)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건축 파트너쉽 또는 회사로 등록할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파트너쉽/회사는 노던준주 내에 사업장을 가지거나 그 안에 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최혜국 대우(제7.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1958년 출입국법(연방)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호주에서 출입국 대리인으로 개업하고자 하는 인은 호주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또는 특별범주비자를 가진 뉴질랜드 시민이어야 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1901년 관세법(연방)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호주에서 관세사로 행위하려면, 서비스공급자는 호주 내 및 호주로부터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분야	연구 및 개발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2004년 생물탐사법(퀸즐랜드)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성과공유계약을 위해서는, 생물탐사 연구 및 상업화를 수행하기 위한 샘플 또는 파생물의 사용을 위한 재실시권이, 최초로 퀸즐랜드 기반 실체에게 제안되고, 그 후에 호주 기반 실체, 그리고 그 후에 해외 기반 실체에 제안되어야 한다. 성과공유계약을 가지고 있는 실체는 해외 기반 실체에게 재실시권을 부여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분야	부동산 및 유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1989년 공동체토지관리법(뉴사우스웨일스) 1996년 스트라타단지관리법(뉴사우스웨일스) 2002년 재산, 가축 및 사업중개인법(뉴사우스웨일스) 중개인 면허법(노던준주) 2003년 중개인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2000년 부동산중개인 및 자동차중개인법(퀸즐랜드) 1980년 부동산중개인법(빅토리아) 2006년 부동산거래중개인법(빅토리아) 1978년 부동산 및 사업중개인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1979년 부동산 및 사업중개인(일반) 규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1981년 결제중개인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1982년 결제중개인규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사우스웨일스

호주 거주자가 아닌 인은 (개발 지구, 근린 지구 또는 스트라타 지구의 소유주를 위한) 중개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호주 거주자가 아닌 인은 (부지 소유주를 위한, 소유주의 회사 와의 거래를 위한) 중개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재산, 가축, 사업, 스트라타 관리 또는 공동체 관리 중개인으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면허권자는 뉴사우스웨일스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노던준주

허가 받은 중개인¹¹은 호주에 사무소를 가지고 그 곳에서 또는 그 곳으로부터 허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부동산중개인은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에 주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¹¹ “허가 받은 중개인”은 부동산중개인, 사업중개인 또는 부동산거래중개인을 포함한다.

퀸즐랜드

부동산중개인, 경매인, 자동차중개인 또는 상업중개인으로 영업하려는 인은 퀸즐랜드에 사업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사서함이 아닌 실체가 있는 주소여야 한다.

빅토리아

빅토리아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중개인으로 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빅토리아에 본점을 유지해야 한다. 중개인의 대표자는 빅토리아에 문서가 송달될 수 있는 등록된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빅토리아에 주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빅토리아에서 부동산거래중개인으로 면허를 받거나 부동산거래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부동산중개인 또는 사업중개인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인은 주 내에 등록된 사무소를 설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결제중개인(부동산거래중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은 주 내에 상시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허가받은 결제중개인은 주 내에 등록된 사무소를 설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분야	어업 및 진주채취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중앙 및 지역
조치근거	1991년 수산업관리법(연방) 1991년 외국인어업허가부담금법(연방) 1994년 수산업관리법(뉴사우스웨일스) 1995년 수산업법(빅토리아) 1994년 수산자원관리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1990년 진주채취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2001년 8월 장관정책지침 제17호(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연방

호주어업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어선¹²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어선이 이러한 어업활동을 하도록 승인받은 경우에는 부과금이 부과¹³될 수도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외국인이나 외국인 소유 기관은 지분관리어장에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빅토리아

어장접근허가나 양식허가는 호주 거주자인 자연인이나 호주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단독회사에게만 발급될 수 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개인만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진주채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¹² 이 유보사항의 목적상, “외국어선”은, 1991년 수산업관리법(연방)에 따른 호주 선박의 정의, 즉 호주국적선박(해외 거주자에 의하여 소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호주 거주자나 회사에 의하여 소유되고 호주에서 건조되고 영업기반을 둔 선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선박이다.

¹³ 부과되는 부과금은 1991년 외국인어업허가부과금법 또는 그 개정법을 따른다.

면허를 보유한 법인, 파트너쉽 또는 신탁의 경우, 호주인이 소유 및/또는 지배해야 한다. (발행주식자본, 파트너쉽 지분 또는 신탁재산의 최소 51퍼센트가 호주인에 의하여 소유되어야 한다. 의장, 이사회 과반수 및 모든 회사 임원이 호주인이어야 하며, 호주 지분에 의하여 지명되거나 이를 대표해야 한다.)

분야	광업 및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1.9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1985년 마운트 아이자 광산회사 계약법(퀸즐랜드)
유보내용	<u>투자</u> 마운트 아이자 광산의 운영자는 합리적으로 및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퀸즐랜드 내에 거주하고 이용가능한 전문 자문인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나. 퀸즐랜드 내에서 이용가능한 노동력을 이용한다. 다. 시방서를 작성하고, 입찰을 구하고, 업무·자재·공장·장비 및 공급품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퀸즐랜드의 공급자·제조자 및 계약자에게 합리적인 입찰 또는 견적 기회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라. 업무·자재·공장·장비 및 공급품에 계약을 하거나 주문을 할 때, 가격·품질·납품 및 서비스가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등하거나 더 좋은 경우, 퀸즐랜드의 공급자·제조자 및 계약자를 적절히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우선권을 준다.

분야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1983년 쌀마케팅법(뉴사우스웨일스) 1946년 감자마케팅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사우스웨일스는 쌀에 대한 마케팅 위원회 합의를 유지하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감자에 대한 마케팅 위원회 합의를 유지한다.

분야	기타 사업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매춘규제법(노던준주)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에스코트 중개업에 대한 운영자 혀가나 관리자 혀가를 받을 자격을 가지려면, 그 개인은 노던준주의 거주자여야 한다. 운영자 혀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경우 그 직원 역시 거주요 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1991년 텔스트라 회사법(연방)
유보내용	<u>투자</u>

총 외국 지분은 텔스트라 주식의 35퍼센트 이하로 제한된다. 개별 또는 조직된 단체의 외국인 투자는 주식의 5퍼센트 이하로 제한된다.

텔스트라의 의장과 이사 과반수는 호주 시민이어야 하며, 텔스트라는 호주에 본점, 주영업소, 설립장소를 유지해야 한다.

분야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총기법(노던준주)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총기면허¹⁴를 받으려면 노던준주에 거주해야 한다. 면허와 허가는 보유자가 노던준주 영구 거주를 중단한 후 3개월 이후에 실효된다.

¹⁴ 총기중개인 면허, 기갑장비 담당자 면허, 총기박물관 면허, 총기 수집가 면허, 총기 지원 면허 및 폐인트볼 운영자 면허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분야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주류법(노던준주) 및 정책과 관행 카바관리법(노던준주) 담배관리법(노던준주) 및 정책과 관행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노던준주 면허위원회는, 면허권자가 개인일 경우 주류 면허권자가, 또는 파트너쉽이 면허를 보유한 경우 면허권자 중 최소 1인이, 또는 회사가 면허를 보유한 경우 면허 명의자가, 면허와 관련된 지역 현지에 상시적으로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담배소매면허 보유자는 면허에 명시된 지역에서만 담배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주류 면허 지역과 관련된 담배소매면허는 해당 지역의 주류 면허권자에게만 부여된다.

카바소매면허 신청인은 노던준주의 관련 면허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분야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1.9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1994년 와인산업법(퀸즐랜드)
유보내용	<u>투자</u> 와인 판매를 위한 와인상인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를 받은 사람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퀸즐랜드 와인산업에 기여해야 한다. 와인 판매를 위한 와인생산자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와 관련된 지역에서 그 인이 직접 기른 과실로부터 만든 와인을 판매하거나, 면허와 관련된 지역에서 그 인이 직접 만든 와인을 판매해야 한다.

분야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1961년 국립혈청연구소법(연방)
유보내용	<u>투자</u>

중대한 외국인 주식보유¹⁵에 따른 의결권은 특정 시기에 재임한 국립혈청연구소(CSL)의 이사 중 1/3을 초과하는 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에 관하여는 산입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용하는 주설비 및 호주에서 개인이 기부한 혈액 또는 혈장에서 추출한 사람의 혈장에서 파생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국립혈청연구소의 자회사는, 호주에 위치해야 한다. 국립혈청연구소 이사회 이사의 2/3와 모든 회의의 의장은 호주 시민이어야 한다. 국립혈청연구소는 호주 밖에서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한다.

¹⁵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중대한 외국인 주식보유”란 외국인이 국립혈청연구소에서 의결권있는 주식의 최소 5퍼센트에 대한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인이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립혈청연구소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분야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1988년 여행사법(퀸즐랜드) 1985년 여행사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1986년 여행사규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퀸즐랜드

여행사로 영업하기 위한 허가를 취득하려는 인은 퀸즐랜드에 사업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여행사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인은 주 내에 주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분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p>1992년 자연보전법(퀸즐랜드)</p> <p>2006년 자연보전(야생동물 관리)규정(퀸즐랜드)</p> <p>2006년 자연보전(행정)규정(퀸즐랜드)</p> <p>2000년 자연보전(보호식물)보전계획(퀸즐랜드)</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퀸즐랜드 환경유산보호부의 책임자는 야생동물 이동허가를 제외한 야생동물 권한을 주 내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¹⁶.</p> <p>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인만 보호 식물을 위한 승인된 재배자 또는 번식자로 승인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연인인 경우, 주의 거주자일 때, 또는 나. 회사인 경우, 회사가 식물을 재배하거나 번식시키는 부지를 주 내에 가지고 있을 때 <p>개인이나 회사는, 개인인 경우 호주 시민이거나 호주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또는 법인인 경우 호주에서 설립된 경우에만, 이 법에 따른 결정, 결정 미비 또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로 취급된다.</p>

¹⁶ 이 용어는 2006년 자연보전(행정)규정(퀸즐랜드) 목록7에 정의되어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2010년 경쟁 및 소비자법(연방)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호주로 또는 호주에서부터 국제 정기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원양화물선은 항상 호주 거주자인 자연인에 의하여 대표되어야 한다.

등록된 해운규약가맹동맹 또는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등록된 비동맹 원양화물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인¹⁷만 이, 합리적인 한도에서, 동맹 회원 및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비동맹 사업자가 다른 해상운송사업자가 외부로 향하는 정기화물 서비스의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리적’ 임을 결정하는데 해당되는 사안에는 호주의 국익과 호주 운송업체의 이익이 포함된다.

¹⁷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2010년 경쟁 및 소비자법 제10부의 제10.48절 및 제10.58절은 이 유보사항이 적용되는 인들의 범주를 열거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1920년 항공법(연방) 장관성명
유보내용	<u>투자</u>
	개별적인 호주국제항공사(콴타스 제외)의 외국인 소유권의 합은 최대 49퍼센트로 제한된다.
	더 나아가,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가. 이사회 의 최소 2/3는 호주시민이어야 한다. 나. 이사회 의장은 호주 시민이어야 한다. 다. 항공사의 본점은 호주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라. 항공사의 운영기반은 호주에 위치해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1992년 콴타스매각법(연방)
유보내용	<u>투자</u>
	콴타스 항공의 외국인 소유권의 합은 최대 49퍼센트로 제한되며, 개별적인 외국인의 지분 소유는 25퍼센트, 그리고 외국항공사 지분의 합은 35퍼센트로 제한된다. 또한
	가. 콴타스의 본점은 항상 호주에 위치해야 한다.
	나. 콴타스 운영시설의 과반은 호주에 위치해야 한다.
	다. 항상, 콴타스 이사의 최소 2/3는 호주 시민이어야 한다.
	라. 콴타스 이사회 회의에서 회의 의장인 이사(어떻게 기술되든)는 호주 시민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 콴타스는 호주 외부에서 법인이 되기 위한 행위를 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분야	운송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내국민 대우(제7.2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상업승객(도로운송)법(노던준주) 2002년 도로운송(공공승객서비스)규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u>노던준주</u>

택시면허는, 보유자가 개인인 경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노던준주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인인 경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주사업장이 노던준주에 있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다.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공공 운송 서비스 운영 인증 신청은 호주 시민이나 호주 영주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